

지역지부 규약

제정 2011. 10. 27

개정 2012. 05. 17

개정 2014. 05. 29

개정 2025. 05. 23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본 규약은 한국원자력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 6 조 및 동시행세칙 제 26조 제2항.제30조에 의거하여 지역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.

제 2 조 (목적) 지역지부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, 지역 회원 상호간의 협조, 그리고 지역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과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설치) 지역지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때에는 제4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지부설치 발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아래의 서류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1. 회원명부-----1부
2. 해당년도 사업계획서-----1부
3.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안-----1부

제 2 장 구성 및 운영 등

제 4 조 (구성) 지역지부(이하 “지부”라고 한다)는 학회정관 제7조의 회원중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구성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탈퇴) 지부의 회원은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지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1. 지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2. 지부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

3. 지부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 발표

제 7 조 (활동) 지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1. 학술회와 강연회의 개최 및 참여
2. 지역기관 및 주민들과의 상호협력 도모
3. 소식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
4. 산학연과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협조 증진
5. 원자력기술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활동
6. 기타 지부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 8 조 (지부 임원)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
1. 지 부 장 1명
2. 부지부장 1명
3. 총 무 1명
4. 감 사 1명

제 9 조 (임원 임기)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직무)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위임 및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총무는 회무를 담당하고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지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감사의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보고) 지부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활동결과보고서 및 당해연도 활동계획서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임원 선출 및 하부조직) ① 지부장, 부지부장, 감사는 학회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당해 5월중 지부총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한다. 지부는 선출된 임원을 6월 15일까지 학회 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추천이 없을 경우는 학회 회장이 직접 위촉한다.

③ 지부장은 지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하부조직을 설

치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지부총회의 기능) 지부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2.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주요사항

제 14 조 (지부총회의 소집) ①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5월중에,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지부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15 조 (지부총회의 의결정족수) 지부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임으로 출석 및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지부총회소집의 특례) ①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부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임원 2인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지부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지부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부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지부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17 조 (지부총회 의결 참여 제외 사유) 지부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부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학회 또는 지부와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3 장 학술회 등 개최 및 지원비 운영 등

제 18 조 (학술회 등의 개최 및 비용 충당 등) ① 지부는 국내·국제 워크숍 또는 학술회의(이하 “학술회 등”이라 한다)를 개최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부는 학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등록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등록비 등 금전의 수입, 지출은 학회명의로 은행계좌를 통하여 시행한다. 단, 국외 지역지부는 현지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.

③ 학회는 국내 학술회 등의 경우 1백만원 이내, 국내유치 국제 학술회 등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준비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, 지부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한도액을 초과하여 준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부장의 요청에 의거 학회 회장이 결정한다. 국외 지역지부가 현지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대하여서도 상기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.

④ 지부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제행사비용(학술회 등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)을 정산하여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.

⑤ 지부는 학술회 등 정산 결과 잔액(수익금)이 발생한 경우에 수익금의 50% 이상을 학회에 조건없이 납부·기여하여야 하며, 나머지 50% 미만은 학회의 지부 계정에 예치하여, 4년내에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되 4년차 말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학회가 흡수한다.

⑥ 지부는 제5항의 잔액(수익금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단체나 국내외학술회의 등에 기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⑦ 지부에 대한 학회 이외의 외부 단체 등의 기부금 등의 관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 조 (지역협력 활동 및 비용 충당 등) ① 지부의 지역협력활동을 위한 비용은 학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. 단, 각 지부별 회원수 및 활동사항에 따라 차등 또는 미지원 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20 조 (해산) 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각 지부의 정기총회를 통해 초대 임원진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학회장이 임시 임원진을 임명하여 지부를 운영하도록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